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377
----------	-------

발의연월일 : 2025. 8. 26.

발 의 자 : 이원택 · 조승환 · 최형두
이수진 · 이병진 · 최민희
문대림 · 서삼석 · 송옥주
한병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우리 수출입물량의 99.7%가 선박으로 수송되고 있으며, 해운산업은 국가 수출경쟁력과 전략물자 운송의 핵심으로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공급망 유지를 위한 필수 산업임.

해운산업, 특히 정기 해상화물운송시장은 항로 당 여러 척의 선박이 투입됨에 따라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나 이러한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 해운 선진국들은 역사적으로 선박배치, 화물적재, 운임 등에 대한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해운법」에 따라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도 다른 법률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양 법률 중 어느 법률이 적용되는지가 불명확하여 선사들의 공동행위

에 대한 법적 안정성이 불완전한 실정임.

이에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해운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이를 통한 우리나라 수출입화주의 무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공동행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공동행위에 관한 해양수산부 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한도를 상향하여 해상운송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제8항 신설 등).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 내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⑧ 제2항에 따라 신고된 협약 및 그 협약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지는 제1항에 따른 협약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조제1항 후단 중 “제28조, 제29조제2항·제5항”을 “제28조”로, “으로”를 “으로, 제19조제1항제14호의 “제21조제3항”은 “제29조제2항·제5항”으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임 등의 협약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약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9조(운임 등의 협약) ①·② (생략) <u><신설></u>	제29조(운임 등의 협약) ①·② (현행과 같음)
③·④ (생략)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 내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된 협약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협약의 시행 중지, 내용의 변경이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인 때에는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1. ~ 3. (생략)	⑥ ----- ----- ----- ----- ----- ----- ----- . <단서 삭제>
⑥ (생략) <u><신설></u>	1. ~ 3. (현행과 같음)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⑧ 제2항에 따라 신고된 협약 및 그 협약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지는 제1항에 따른 협약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

